

보도자료



금응위원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1.8.10.(화)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책 임 자 권 유 이(02-2100-2510)

담 당 자

김 영 대 사무관(02-2100-2514) 이 용 준 사무관(02-2100-2511)

제 목:「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」국무회의 통과 - 8.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%p 인하됩니다.

- ① (개요) '21.8.10(화) 국무회의에서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부업법 시행령) 개정안」이 의결되었습니다.
 - * 입법예고('21.5.3.~6.14.) → 규제심사 → 법제처 심사 → 차관·국무회의
- ② (**주요 내용**) 개정안은 「대부업 제도개선 방안^{*}」의 후속조치로서,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%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.
 - * 최고금리 인하(7.7. 시행) 후속조치로서,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%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('21.4.1 발표)

<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>

대부금액	현행	개정
5백만원 이하	대부금액의 <u>4%</u>	대부금액의 <u>3%</u>
5백만원 초과	20만원 +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<u>3%</u>	15만원 +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<u>2.25%</u>

- * (예) **1,300만원**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**33만원**(=15만원 + 800만원*2.25%)
- ③ (향후 일정)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대부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(8.17일 공포·시행 예정)되며,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